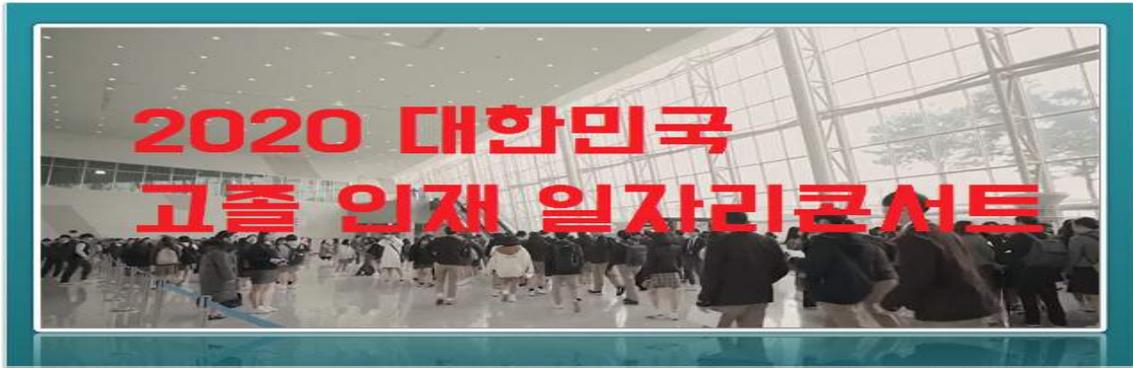


##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행사 연기)



####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행사 연기 안내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6월 3일(수)-4일(목)로 연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예방책에  
동참하고 참여기업과 참관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행사 연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개최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많은 양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최일정 변경

2020년 3월 25일(수)-26일(목) 킨텍스6홀



2020년 6월 3일(수)-4일(목) 킨텍스6홀

안전하고 알찬 행사로 확대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T.02-360-4509 M.010-8972-3620 E. info@gojobcon.kr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 2020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중견기업과 함께  
내일을 보다

# 202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2020. 03. 30(월) 10:00 – 17:00 | COEX B1 Hall**

**www.fome-job.com**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주관 **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

일시	2020.03.30(월)		
장소	서울 강남구 Coex Hall B1		
참가대상	우수 중견기업 80개사 이상, 참여 구직자 4,000명 이상		
행사구성	채용상담관, 심층면접관, 취업특강, 개막식, 부대행사관 등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		
기업신청기간	~ 2020.02.21(금)	개인신청기간	2020.03.02(월) ~ 03.30(월)
문의처	02-6365-7008	FAX	02-393-8210
담당자	박람회 운영사무국	E-MAIL	career@keddisco.com
사이트(출처)	http://fome-job.com		

\*자료출처 : <http://fome-job.com>

□ 2020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일시	2020.4.6.(월)-4.7.(화), 09:30-18:00		
장소	COEX C 1-2홀		
참가대상	취업을 원하는누구나 , 참가기업 약 150개사, 방문구직자 약 15,000명		
행사구성	(채용상담관) 기업-구직자 1:1 또는 1:多 현장상담 외 기타 부대행사		
주최	산업부, 서울시		
주관	KOTRA, 금감원		
기업신청기간	주관측에 문의	개인신청기간	홈페이지 사전등록및 행사당일참석
문의처	02-3460-7846	FAX	--
담당자		E-MAIL	jf@kotra.or.kr
사이트(출처)	<a href="http://www.jobfairfic.org/v20/">http://www.jobfairfic.org/v20/</a>		

\*자료출처 : <http://www.jobfairfic.org/v20/>

□ 2020 서울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2019.4.17.(수) 10시 ~16시 | SETEC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제 1-2 전시실 3호선 학여울역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사무국 1588-1954



2019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함께서울 누리축제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가 궁금할때?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온라인박람회  
2019. 3. 25 ~ 4. 26  
<http://jobable.seoul.go.kr>

일시	2020년 4월 20일(월) 10:00~16:00		
장소	SE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제1, 2 전시실 - 3호선 학여울역		
참가대상	300개 기업 및 10,000여 명의 구직 장애인		
행사구성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 구직자		
주최	서울시		
주관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신청기간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사무국문의	개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70-4287-1625	FAX	02-796-9857
담당자		E-MAIL	jobable@hanmail.net
사이트(출처)	<a href="http://job.seoul.go.kr/expo/index.jsp">http://job.seoul.go.kr/expo/index.jsp</a>		

\*자료출처 : <http://job.seoul.go.kr/expo/index.jsp>

- ◇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 관광업 등 충격이 큰 업종 중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
  -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 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 이번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과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2.28(금) 발표되었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현행 2/3에서 3/4 수준\*으로 높여 지급한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3/4, ▲그 외 기업: 1/2(원칙) → 2/3

○ 이번 지원금액 상향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련된 조치이다.

\*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 지원 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라, 월 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의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하게 된다.

-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되는 이번 조치는 향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 또는 휴직)를 실시하고 매달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번에 상향된 지원금은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http://www.ei.go.kr))"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문의

- ②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도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 설계 고용안정 사업 예시 >

- ▲ 코로나19 피해기업 무급휴업·휴직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한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고용보험 미가입자 우선)
-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방역인력 채용 및 방역비용 지원 등

- 고용노동부는 신설되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③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한다.

-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의 요건 완화, 지원수준 상향 등이 적용된다.

**④ 고용위기지역은 금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군산시, 울산 동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18.4.5~'20.4.4), 목포·영암('18.5.4~'20.5.3)

**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근로자 소속 기업 대상 이메일 발송,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 수급 근로자 대상 문자메시지 긴급 발송 등

- 아울러, 자녀의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② 1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③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  
 ④ 코로나 상황 종료시까지 지원

**⑥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 (현행)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의 2/3 이하(‘20년 기준 259만원) →  
(개정) 월평균소득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기준 388만원)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⑦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어 **채불임금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 **채당금 지원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금번 마련한 지원 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사무관(☎044-202-7223),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044-202-7406),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사무관(☎044-202-7477), 퇴직연금복지과 배정대 사무관(☎044-202-75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높이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19년 고용유지지원금 전체 지원실적: 1,514개사 31,064명  
vs 최근 30일간 (1.29~2.27.)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내역: 1,621개사, 23,828명

○ 특히,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 2.17. 자동차업계 간담회, 2.25. 관광업계 간담회 등

**<2> 이번 고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6개월)으로 상향됩니다.

○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4까지 지원합니다. 이 경우,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 지원비율: ▲우선지원대상기업: (현재) 2/3→(변경) 3/4 ▲그 외 기업: (현재) 1/2→(변경) 2/3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140만원	140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93만원	105만원 (+12만원)
	기업부담분(A-B)	47만원	35만원 (-12만원)

**<3>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①'20.2.1.~7.31.(6개월) 동안 ②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예: '20.1.1. 고용유지조치실시)에게도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0.2.1. 이전 또는 '20.7.3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20.2.1.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p><b>※ 사례1</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유지조치를 '19.12.1.~'20.3.31.까지 실시한 경우</li> <li>⇒ '19.12.1.~'20.1.31.(2개월) : 3/2 지원</li> <li>⇒ '20.2.1.~'20.3.31.(2개월) : 3/4 지원</li> </ul>	<p><b>※ 사례2</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유지조치를 '20.6.1.~'20.9.30.까지 실시한 경우</li> <li>⇒ '20.6.1.~'20.7.31.(2개월) : 3/4 지원</li> <li>⇒ '20.8.1.~'20.9.30.(2개월) : 2/3 지원</li> </ul>
---	---

**<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

\* (가정) 월급 200만원, 휴업수당 140만원인 노동자            : 지원금 상향 지원

구 분	고용유지조치 기간 / 지원 금액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사례 1)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19.12.1.~'20.3.31.	93만원	93만원	105만원	105만원
(사례 2)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20.6.1.~'20.9.31.		'20.6월 105만원	'20.7월 105만원	'20.8월 93만원 '20.9월 93만원

**<5>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

**<6> 1일 지원금액 상한액(66,000원)도 높아지는 건가요?**

-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42,469원),\* 상한액 지급비율

(전체의 1.3%)을 감안하여, 1일 최대 지원금액(66,000원, 월 30일 기준 198만원)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 '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

<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월 30일 기준 >

사 례	구 분	현 행	지원비율 상향 시(2/3→3/4)
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휴업수당(A)	297만원	297만원
	고용유지지원금(B)	198만원	198만원 (동일)
	기업부담분(A-B)	99만원	99만원 (동일)

<7> 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http://www.ei.go.kr))”에서 가능하며,
  - ↳ ①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http://www.ei.go.kr)) → ②상단의 “기업서비스” → ③“고용안정장려금” → ④“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 가능
-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http://workplus.go.kr>에 연락처 안내)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 >



<8>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9>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이미 신고하였는데, 계획대로 휴업·휴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변경 신고서 제출 방법은 “고용유지조치계획서”와 동일

<10>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감원을 해도 지원이 되나요?

-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계속 고용해야 하는 기간은 최소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를 의미합니다.

<1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

-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실 경우, 지급 제한·추가 징수(최대 5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고시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비율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 1.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임(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 다만,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보다는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임

### 3. 오늘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함
  -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됨

### 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음

-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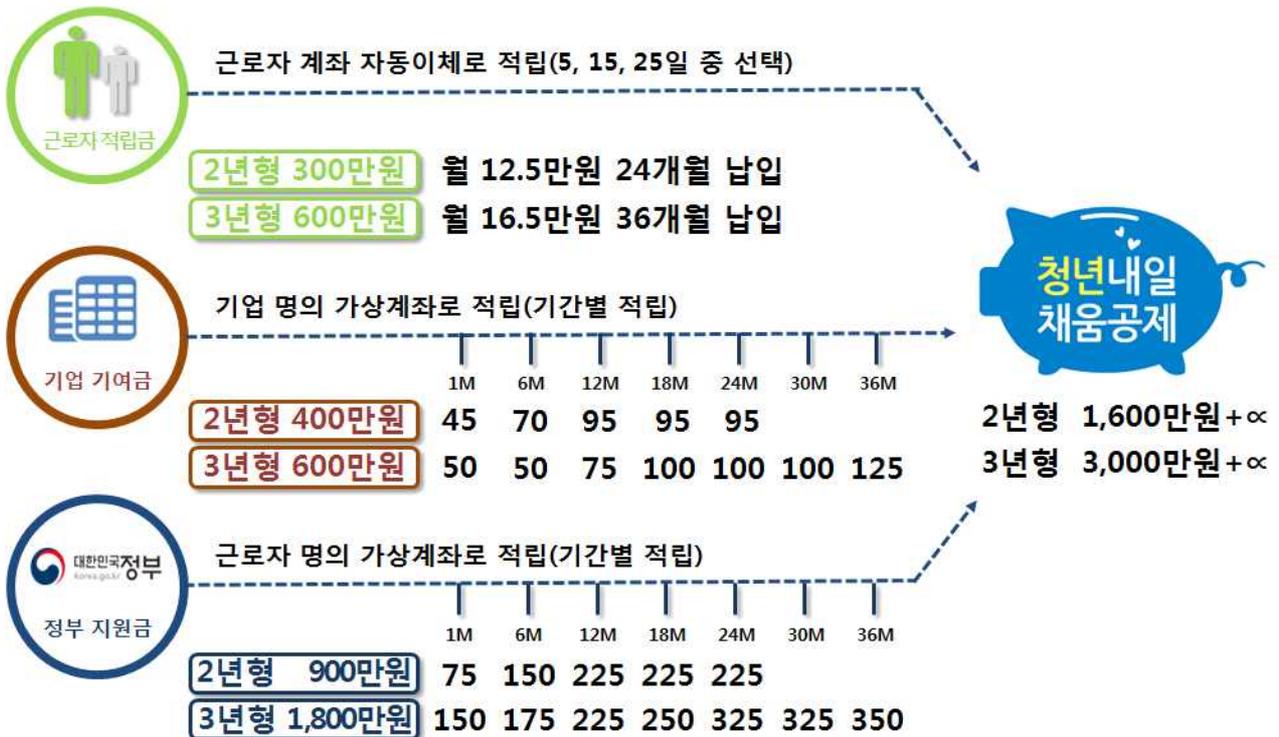
\* 가족돌봄휴가 지침 시달(~3월 1주),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3월 2주 예정)

## 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함
  -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최대 10일간 지원함
  -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 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 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

## 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1	고용창출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li> <li>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li> <li>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li> <li>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li> <li>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li> </ul>
2	고용안정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li> <li>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li> <li>③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li> <li>④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li> </ul>
3	고용유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용유지지원금,</li> <li>② 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li> </ul>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li> <li>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li> </ul>

## 2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 3 문의처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 02-2171-1800~5)

##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 창 장려 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2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 청년(만15~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 사업주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3년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고 안 장려 금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휴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 유 지 원 금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장 년 · 고 령 자 고 용 지 원 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수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분기별 신청), 최대 2년간 지원